

서울特別市永登浦區高速鐵道建設事業
支援을위한區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
審查報告書

1992. 11. 23.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11월 1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2년 11월 18일
- 다. 상 정 일 자 : 제14회 영등포구의회(임
사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개
회(1992년 11월 23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金興權)

가. 提案理由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의
동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과세를
면제함으로써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세면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한국 고속철도 건설 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속철
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
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기 및 정
비창궤도 부설전진기지, 송전시설등 사
업용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서업소세를 면제하기로 함.
-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면제대상임을
알수 있을때에는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전문위원 : 金熙中)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
치단체는 공익상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
여 있고,
- 동법 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되어 있으므로,
- 내무부장관의제정준칙(안) 및 서울특
별시장의준칙(안)을 근거로 영등포구
청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은 적절하
다고 사료되오며, 다만, 안 제3조제2항
단서규정이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나
이는, 행정처리의 번잡을 줄이고 민원
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우리구는 아직은 미확정 상태
이나 고속철도 본선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별 첨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속철도건설
사업지원을위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
부.

서울特別市永登浦區高速鐵道建設事業 支援을위한區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

의안 번호	133
----------	-----

발의년월일 : 1992년 11월 17일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提案理由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의 동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세 면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가. 한국 고속철도건설 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고속 철도 건설 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있는 고속철도본선, 정차장, 차량기지및 정비창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시설등 사업용 재산에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동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기로함.

나.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자는 신청에 의하도록하고 구청장이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관련법류

지방세법 제7조 및 9조

4. 제정근거

세정 22670-1037(92.11.3)호로 내무부장관의 제정 준칙안 시달로 허가거름

5. 예산상황

별도 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特別市永登浦區高速鐵道建設事業 支援을위한區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면제) ①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 시설등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공동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예)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을 위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
- ③(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